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 및 철거절차



주민신청(상시)
(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)

대상자 선정
(시·군·구)

대상자 통보
(시·군·구 ▶ 주민)

수요신청
(시·군·구 ▶ 시·도 ▶ 환경부)
[전년도 4월]

확정물량 및 예산통보
(환경부 ▶ 시·도 ▶ 시·군·구)
[전년도 12월~1월]

지침시달 및 국고교부
(환경부 ▶ 시·도 ▶ 시·군·구)
[1월]

사업시행
면적조사, 철거진행
(지자단체 직접수행 또는 위탁처리)
[2~12월]

실적평가
(환경부)
[익년 1월]

정산보고
(시·군·구 ▶ 시·도 ▶ 환경부)
[사업완료 후 30일이내]

환경부
MINISTRY OF ENVIRONMENT

발행 :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(044-201-6814)
(우) 339-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이 발행물은 국민들에게 환경정책을 알리고 정책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행한 홍보물입니다.

© 2014 Copyrights Ministry of Environment. All Rights Reserved.

MINISTRY OF ENVIRONMENT
http://www.me.go.kr

슬레이트 철거비 지원안내

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**슬레이트 철거**를 통해
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.



환경부
MINISTRY OF ENVIRONMENT

환경부

[슬레이트 정부대책 Q & A]

Q 슬레이트는 왜 철거 · 처리하여야 하는지요?

A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10~15%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이기 때문입니다.

Q 전국에 슬레이트 건축물은 얼마나 되며, 정부의 처리대책은 어떤가요?

A 141만동이며 주거용이 73만동을 차지하고 있고, 2021년까지 약 19만동의 노후된 주택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

Q 슬레이트 처리 지원 성과는?

A '11년부터 정부지원을 시작하여 '14년까지 약 5만동의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· 처리하였습니다.

Q 주택외 비주거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도 지원하는지요?

A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며, 공장, 축사 등 비주거용의 지원에 대해서는 중 · 장기적으로 검토 · 추진할 계획입니다.

Q 슬레이트 지붕을 개인이 철거할 수 있나요?

A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되어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으며, 석면비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철거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※ 석면해체 · 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스스로 해체 · 제거 가능

환경부

'15년도 슬레이트 철거 · 처리 지원사업 안내

지원대상	• 슬레이트로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▶ 1가구에 대해서만 지원
지원범위	• 슬레이트 철거, 운반, 처리에 드는 비용
국고지원율	• 가구당 168만원 정액지원 ▶ 지역여건에 따라 면적에 관계없이 철거비 전액 지원 가능

[슬레이트 철거 · 처리 Q & A]

Q 슬레이트를 철거할 경우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는지요?

A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에게 슬레이트 철거 ·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, 지역여건에 따라 철거비 전액지원 합니다.

※ 국고는 가구당 168만원 지원, 지방비는 국고이상 편성하여 자부담 최소화

Q 신청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?

A 시 · 군 · 구(환경 및 건축관련) 및 읍 · 면 ·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적격여부 등을 판단하여 슬레이트 지붕철거 대상자로 결정됩니다.

※ 정기 신청(1월말), 수시(연중)

Q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대상에 부속건물도 지원 가능한가요?

A 주택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주택부지와 인접하여 위치한 보관창고, 개인축사 등은 부속건물에 포함되어 지원가능합니다.